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2 - 1011 호

신촌지역(마포) 4-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안) 재공람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101(2010.03.18.)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)수립 (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04(2014.08.28.)호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106-9번지 일대 신촌지역(마포) 4-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민공람(2021.03.25.~2021.04.23) 하였으나, 2022.07.06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(소)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재공람·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28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공람기간 : 2022. 7. 28. ~ 2022. 8. 29.
2. 공람장소 : 마포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153-9364)
3. 공람사유 : 22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(소)위원회 (2022.07.06.) 심의결과 등 반영
4. 공람내용 : 신촌지역(마포) 제4-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안)
  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신촌지역(마포) 제4-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   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변경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신촌지역(마포) 제4-9지구	마포구 노고산동 106-9번지 일대	4,827.2	감) 111.5	4,715.7	정비기반시설(소공원) 면적 변경

다. 정비계획(안)

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: 변경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4,827.2	감) 111.5	4,715.7	100.00	
정비 기반시설	도로	445.5	-	445.5	9.45	지정
	소공원	626.9	감) 111.5	515.4	10.93	분담
획지		3,754.8	-	3,754.7	79.62	

2)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4,827.2	감) 111.5	4,715.7	100.0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-	증) 399.4	399.4	8.47	소공원2
	준주거지역	626.9	감) 510.9	116.0	2.46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4,200.3	-	4,200.3	89.07	획지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

가) 도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3	2	12	국지도로	177 (82)	노고산동 106-8	노고산동 109-108	일반도로	-	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(64.07.08)	
기정	중로	3	3	12	국지도로	176 (60)	노고산동 107-108	노고산동 107-12	일반도로	-	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(64.07.08)	
기정	소로	3	6	6	특수도로	61	노고산동 106-13	노고산동 106-43	보행자전용도로	-	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(64.07.08)	
기정	소로	3	7	6	특수도로	140	노고산동 106-77	노고산동 106-39	보행자전용도로	-	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(64.07.08)	

※( )는 4-9지구 내 도로 연장임

나) 공원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②	공원	소공원	신수동 81-21일대	1,999.0 (626.9)	- (감 111.5)	1,999.0 (515.4)	서울시고시 제2014-304호 (14.8.28.)	-

※( )는 4-9지구에서 부담하는 면적임.

4) 기존 건축물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합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-	신촌지역 마포4구역 제4-9지구	4,707.3	획지	3,754.8	노고산동 106-9 일대	18	-	-	18	-	-

5) 건축물에 관한 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치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신촌지역 마포4구역 제4-9지구	4,827.2	획지	3,754.8	노고산동 106-9 일대	업무	60이하	기준 500이하 허용 700이하	80m 이하	-
변경		4,715.7		3,754.8		주거	60이하	기준 500이하 허용 680이하 상한 894이하	87m 이하	
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

■ 주택공급계획 : 374세대 (임대 76세대, 오피스텔 88세대)

■ 전체건립규모(전용면적 기준)

건립규모		세대수	비율
합계		374	100%
공동주택	소계	286 (임대:76)	76.47%
	40㎡이하	78 (임대:46)	20.86%
	40㎡초과 85㎡이하	208 (임대:30)	55.61%
오피스텔	40㎡초과 85㎡이하	88	23.53%

심의완화 사항

■ 공공주택 도입에 따른 주거비율 완화
- 주거비율 86.86%이하 : 주거용 용적률 400% 이하 → 775.02% 이하
- 공공주택 : 95.33% 이상 공급
- {허용용적률680%-주거용적률400%-비주거용적률(계획용적률의 13.14%)117.24%}의 1/2이상

■ 높이완화
- 최고높이 80m 이하 → 87m 이하(7m 완화)

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

• 서강로18길, 서강로20길(보행자 도로변) 건축지정선 2m 지정
• 백범로2길, 서강로20길 (일반도로변) 건축한계선 2m 지정

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• 공개공지-1 : 대상지 남서측(보행자도로변)
• 공개공지-2 : 대상지 북동측(신촌역변)

기타사항에 관한 사항

•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설치
- 대상지 도로변(백범로, 서강로(보행자도로)변)으로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

■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

<table>
<tr><th>건립규모</th><th colspan="9">산정내용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토지이용계획</td><td rowspan="2">시행면적
(㎡)</td><td rowspan="2">획지면적
(㎡)</td><td colspan="3">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(㎡)</td><td colspan="3">환산면적(㎡)</td><td rowspan="2">용도폐지
되는
국공유지</td></tr>
<tr><td>합 계</td><td>도 로</td><td>소공원2
(분담면적)</td><td>합 계</td><td>건축물</td><td>대지지분</td></tr>
<tr><td></td><td>4,715.7</td><td>3,754.8</td><td>960.9</td><td>445.5</td><td>515.4</td><td>353.36</td><td>204.34</td><td>149.02</td><td>31.2</td></tr>
<tr><td>공공시설부지
제공면적
(순부담)</td><td colspan="9">•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+ 건축물 기부채납 면적 - 용도폐지 국공유지 면적
= 960.9㎡ + 353.36㎡ - 31.2㎡ = 1,283.06㎡</td></tr>
<tr><td>기준용적률</td><td colspan="9">• 기준용적률 = 500%</td></tr>
<tr><td>허용용적률</td><td colspan="9">• 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인센티브(최대 200%) = 500% + 180% = 680%
• 인센티브 = 180%
[친환경개발(100%) + 방재시설(30%) + 저층부가로활성화, 무장애도시조성(50%)]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상한용적률</td><td colspan="9">•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
• 상한용적률은「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부채납 유형별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조정방안 (2021.3.)」적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• 상한용적률
= 500% + 180% + 223.55%
= 903.55% (894%이하 적용)
• 인센티브 = 허용용적률 × (1 + 1.3 × 가중치 × α)
= 680% × (1 + 1.3 × 0.7401 × 0.3417)
= 903.55%</td><td colspan="5">• α값 산정 :
순부담 면적 ÷ 대지면적
= 1,283.06 ÷ 3,754.8 = 0.3417

• 가중치 산정 :
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‘공공시설 등 제공부지’의 용적률 비율
= (445.5 × 700% + 116.0 × 360% +399.4 × 200% + 157.86 × 700% + 195.49 × 700%) ÷ (1,314.26 × 700%)
= 6,808.4 ÷ 9,199.8 = 0.7401</td></tr>
</table>

6) 정비사업 시행계획 : 변경

구분	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 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	비고
				기존	계획	증	
변경	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정비구역지정(변경) 후 4년 이내	토지등소유자	7	286	279	-

7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: 변경

계획기준	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2020.6.23.) - 임대주택 건설 : 상업지역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5%이상 -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%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%이상 전용면적 40㎡이하로 계획 •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2019.10) - 주거용적률 400%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/2을 공공주택으로 공급 -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%이상을 전용 85㎡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, 공공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60%이상 전용 40㎡이하 확보 -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주택 확보 시 상업지역에서는 민간임대주택(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,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가능
산출근거	• 전체세대수 : 286세대 •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: 76세대 -「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에 따라 완화용적률의 1/2인 95.33%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세대수 : 61세대 -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」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고 용적률을 완화 받은 임대주택 세대수 : 15세대 • 전용 40㎡이하 세대수 : 46세대 이상

건립규모	임대주택 세대수	전체세대수 대비 비율	임대주택 비율
합계	76	26.57%	100.0%
40㎡이하	46	16.08%	60.53%
40㎡초과~85㎡이하	30	10.49%	39.47%

5. 관계도서 : 마포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153-9364)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 - 1015호

신촌지역(마포) 2-7지구
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안) 재공람·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-304(2014.8.28.)호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57-20번지 일대 신촌지역(마포) 2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,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제안이 있어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마포구공고 제2021-8호(2022.1.6.)로 주민공람·공고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계획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재공람·공고합니다.

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2년 7월 28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**공람기간** : 2022. 7. 28. ~ 8. 29. (30일 이상)
2. **공람장소** : 마포구청 도시계획과(☎02-3153-9362)
3. **공람내용** : 신촌지역(마포) 2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(변경)(안)

가.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기정	특별계획구역4 (신촌마포2구역)	마포구 노고산동 57-1번지 일대	9,502.0	-	9,502.0	

※ 특별계획구역4(신촌마포2구역) 외 기재 생략

나.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(변경)

구 분		계 획 지 침			비 고
		기 정		변 경	
용도지역		일반상업지역		(좌 동)	-
건축물 용도	권장용도	판매, 업무, 관광숙박, 의료시설 중 병원, 교육시설 중 학원		**주거**, 판매, 업무, 관광숙박, 의료시설 중 병원, 교육시설 중 학원	세부개발 계획 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
	불허용도	양화로변	단독주택, 공동주택(주거복합건축물 제외)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례식장, 격리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, 일반숙박시설, 위락시설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, 교정 및 군사시설	(좌 동)	전층
		양화로변 외 지역	단독주택, 공동주택(주거복합건축물 제외), 일반숙박시설, 장례식장, 격리병원, 정신병원, 요양병원,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,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, 교정 및 군사시설	(좌 동)	
건폐율		60% 이하		(좌 동)	-
용적률 (기준/허용/상한)		일반상업지역 (600%이하 / 800%이하 /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)		(좌 동)	-
최고높이		100m 이하		(좌 동)	-

※ 특별계획구역은 용도, 밀도,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(세부개발계획)에서 정한 바에 따름(용적률 인센티브, 획지계획 등)

※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항은 신촌지역(마포) 2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함

■ 변경사유: 『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] 변경 (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1호, '22.06.23.)』에 따른 주거 주용도 도입을 위한 용도계획 변경

다. 정비사업의 명칭: 신촌지역(마포) 2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라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 적 (㎡)			비 고 (최초 결정일)
			기정	증감	변경	
변경	신촌지역(마포) 2-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마포구 노고산동 57-20번지 일대	1,502.8	증) 371.5	1,874.3	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304호 (2014.08.28.)

※ 변경사유: 문화시설(폐지) 토지 및 존치지구(2-9지구)내 일부토지 2-7지구 편입에 따른 구역면적 증가

마. 정비계획

1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명 칭	면 적 (㎡)			비율(%)	비 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	1,502.8	증) 371.5	1,874.3	100.0	-
정비기반 시 설	소 계	169.9	감) 169.9	-	-	-
	도 로	25.1	감) 25.1	-	-	-
	문화시설	144.8	감) 144.8	-	-	문화시설 폐지
획지		1,332.9	증) 541.4	1,874.3	100.0	-

※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) 용도지역·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면 적 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	1,874.3	-	1,874.3	100.0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1,874.3	-	1,874.3	100.0	

3)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가) 도로(변경)

구분	규 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 치	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기 점	종 점			
기정	중로	3	8	12	국지 도로	일반 도로	46	노고산동 57-4	노고산동 57-59	-	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(64.7.8)	
변경	소로	2	8	8	국지 도로	일반 도로	46	노고산동 57-4	노고산동 57-59	-	-	
기정	소로	3	2	6	국지 도로	보행자 우선도로	61	노고산동 57-45	노고산동 57-12	-	서고 2011-286호 (11.9.29)	

■ 변경사유서

도 로 명	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기 정	변 경		
중로 3-8	소로 2-8	• 폭원변경 : 12m → 8m (감 4m) • 폭원변경에 따른 등급 변경	• 현황도로 폭원을 반영하여 변경

나) 문화시설(변경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 정	증 감	변 경		
폐지	-	문화시설	전시시설	마포구 노고산동 57-20번지 일대	247.9	감)247.9	-	서고2014-304호 (14.8.28)	박물관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-	문화시설	• 폐지	• 지역주민 수요가 낮은 불합리한 기반시설을 폐지

4) 건축물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가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(변경)

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 비 개 량 계 획 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주	
기정	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9,502.0	2-7	1,332.9	노고산동 57-20 일대	13	-	-	13	-	-
변경			2-7	1,874.3							

나)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(변경)

구분	구 역 구 분		획지 구분		위 치	주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신촌지역 마포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9,502.0	2-7	1,332.9	노고산동 57-20 일대	업무	60 이하	기준 600 이하 허용 800 이하	100 이하	-
변경				1,874.3		주거	60 이하	기준 600 이하 허용 797.4 이하 상한 948.26 이하	100 이하	-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•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271호) - 전용면적 85㎡ 이하 규모의 주택 : 전체 세대수의 80% 이상 건립 -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(전용 85㎡) 이하로 확보 • 건립규모 및 비율									

구 분				세대수(세대)		비율(%)
공동주택	일반분양		40㎡ 초과 ~ 60㎡ 이하	114	141	58.1(60.3)
		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7		13.8(14.3)
	공공주택	장기일반 민간임대	40㎡ 이하	29	48	14.8(15.3)
			40㎡ 초과 ~ 60㎡ 이하	19		9.7(10.1)
	소 계		-	189		96.4(100.0)
오피스텔			40㎡ 초과 ~ 60㎡ 이하	7		3.6
	합 계			196		100.0

※ ( )는 공동주택 세대수(189세대) 기준 비율임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2-7지구
심의완화사항</td><td>

• 용적률 : ① (600%) + ② (197.4%) + ③ (150.86%) = 948.26% 적용
① 기준용적률 : 600% 이하
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: 197.4% 적용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목표</th><th>인센티브 대상</th><th colspan="2">기 준</th><th colspan="2">적 용(안)</th></tr>
<tr><td rowspan="3">의무</td><td rowspan="3">친환경
개발</td><td>녹색건축물 인증</td><td rowspan="3">기준등급 준수 시
허용용적률
총량의 ½ 부여</td><td rowspan="3">최대
100%</td><td rowspan="3">100%</td><td rowspan="6">197.4%</td></tr>
<tr><td>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</td></tr>
<tr><td>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계획
유도</td><td>생활 SOC</td><td>도서관, 청소년아동시설,
일자리창출공간 등</td><td>정률부여(0.2)</td><td>최대
50%</td><td>37.4%</td></tr>
<tr><td>보행가로
활성화</td><td>무장애도시조성</td><td>정량부여(30%)</td><td>최대
50%</td><td>30%</td></tr>
<tr><td>안전,방재</td><td>방재관련시설</td><td>정량부여(30%)</td><td>최대
30%</td><td>30%</td></tr>
</table>

③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: 150.86% 적용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공공시설</td><td colspan="2">산 식 = 허용용적률 × 1.3 × (1.3×가중치×α)
※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÷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</td></tr>
<tr><td>1) 어린이집</td><td>산 식 = 허용용적률 × 1.3 × (1.3×가중치×α)
= 797.4% × (1.3 × 1 × 0.04583) = 47.5%
※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÷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
= 85.9 ÷ 1,874.3 = 0.04583</td></tr>
<tr><td>2) 아동청소년
정신건강지원
시설</td><td>산 식 = 허용용적률 × 1.3 × (1.3×가중치×α)
= 797.4% × (1.3 × 1 × 0.09971) = 103.36%
※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÷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
= 186.9 ÷ 1,874.3 = 0.09971</td></tr>
</table>

</td></tr>
<tr><td>

• 주거비율 90% 이하 (지상연면적 기준)
※ 주거용 용적률 400% → 853.43% 이하
•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용적률 160.28% 계획
※ [허용용적률 797.4% - 주거용적률 400% - 비주거 81.33%]의 ½이상 = 158.04% 이상

</td></tr>
<tr><td>건축물의 건축선에
관한 계획</td><td>• 건축한계선 : 이면부 2m (건축물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대지내 공지에
관한 계획</td><td>기정 | • 위치지정 : 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 | ※ 공개공지 조성지침 참고</td></tr>
<tr><td>변경 | - | ※ 폐지사유: 유연한 건축계획을 위하여 위치지정 삭제</td></tr>
<tr><td>기타사항에
관한 사항</td><td>-</td></tr>
</table>

※ 상기 용적률은 추후 건축심의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○ 기반시설 제공계획(변경)

구 분	구 분		시행면적(㎡)	획지면적(㎡)	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(㎡)			시설제공(㎡)			순부담 비율(%)
					계	도로	문화시설1	용 도	면적	귀속청	
신촌지역 (마포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2-7	기정	1,502.8	1,332.9	169.9	25.1	144.8		55.6		15.0%
		변경	1,874.3	1,874.3	-	-	-	소 계	272.8		14.5%
								어린이집 (지상1층)	85.9	마포구	
								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(지상2~3층)	186.9	서울시	

※ 문화시설 폐지 후 지역 필요시설인 어린이집,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 도입

※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· 층고 · 형태는 조정 될 수 있음

5) 정비사업의 시행계획

시행방법	시행예정 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구역지정(변경) 후 4년 이내	토지등소유자	188세대 (기존:1세대/계획:189세대)	-

4. 관계도서 : 생략(기타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)

5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마포구의 상징물

- 구의 휘장

마포가 지닌 다양한 특징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고, 다채로움이 공존하며 도시와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

- 구의 꽃 : 목련 꽃

잎이 나기 전 목련나무에 피는 꽃이며, 향기가 진하고 색깔은 흰색이다. 꽃잎은 6개이고, 밑부분은 연한 홍색으로 청초한 인상을 준다.

- 구의 나무 : 단풍나무

잎이 붉고 아름다우며 공해와 병충해에 강하여 도심의 가로수나 공원수로 좋다.

- 구의 새 : 청둥오리

물오리로 마포의 밤섬에 많이 서식하는 겨울철새이다. 목이 짧고 부리는 평평하며 깃털은 수컷이 더 아름답다.

- 구의 색 : 초록색

안전을 상징하며 평화, 지성, 소박함을 뜻한다.